

웅지세무대학교 총 학 생 회	총 학 생 회 선 거 시 행 세 칙	제정일자	20.11.17
		최근개정	20.12.16

웅지세무대학교 총학생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웅지세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9조에 따라 총학생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총학생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당한 학생대표를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사무의 협조) 전체학생총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총학생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 있어서 제반 사무에 대해 학교의 관할부서와 모든 학생기구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투표권 행사에 대한 보장) 본회 회원이 투표 또는 선거 유세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모든 웅지세무대학교 소속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 당일 현재 제적·자퇴·졸업 등으로 본회 회원의 자격이 소멸한 자
2. 선거 당일 현재 휴학 등으로 본회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제5조(피선거권) 본회 회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장은 부회장과 공동으로 입후보한다.
2. 다음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다.
 - 가. 직전학기 전체 평균평점 3.5 미만인 자
 - 나. 직전학기 생활관 등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다. 학생회비 미납자
 - 라. 해당학기 자기학습 미 참여자
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선관위 심의와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입후보 요건을 강화 혹은 완화할 수 있다. 단, 입후보 요건을 강화 혹은 완화하면서 특정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의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업무 및 권한) 선관위는 사전선거 운동의 규제와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 및 유권해석, 아래 각 호와 같이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련 및 공고물 게시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방법과 일시 조정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당선의 무효여부 심사와 당선인 공고에 관한 사항
6. 총학생회로부터의 선거관리비용조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의 신청에 관한 처리 등 선관위 업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제8조(선관위 피선거권 제한) 선관위의 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및 선거 실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9조(구성) ① 선관위원은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선관위는 실무처리를 위하여 선관위원을 제외한 실무자를 더 둘 수 있다.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선관위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학생관할부서에서 추천하여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선관위의 결정은 재적 인원수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특별사안에 대한 제기(당선효력·입후보자 등록 취소·선관위 자체 징계 등)는 재적 인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일정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관위원은 투표일로부터 3일 전을 기준일로해서 소속 학부(과)의 선거인명부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소속 학부(과)·학년·학번·성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안내문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입후보자 등록) ①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는 아래 각 호의 등록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학부(과)장 추천서 1부 [서식 제2호]
 3. 서약서 [서식 제3호]
 4. 입후보 공약서 [서식 제4호] 및 이력서(소정 양식)
 5. 재학 증명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6. 성적증명서 1부
 7.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명부[서식 제7호]
- ② 입후보자의 등록에 따른 기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기호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 ③ 제1항 제7호에 의한 서식은 제21조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명단공고)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 이후 각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입후보자 등록기간) ①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7일 이내로 정하며, 세부일정은 선관위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선관위 선거 공고) 입후보자는 공약안내 및 홍보를 위한 내용 등 선거 공고에 게재될 내용을 기재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퇴)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투표 시작일 7일 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제5장 선거운동

제18조(선거운동) ① 입후보 마감 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선거 운동 기간 중의 시간제한은 없다.

②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당일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제19조(선거운동본부) 각 후보자는 원활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① 각 후보의 선본 장소는 교내로 제한한다. 단, 교외에서 합숙식은 할 수 있다.
- ② 각 후보당 한 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편의시설(식당, 생활관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서로 다른 후보자는 동일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각 후보자는 선본의 장소와 연락처를 입후보 신청서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한다.

- ⑤ 선본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원 및 유세지원자로 구성한다.
1. 임원은 각 후보자가 선임한다.
 2. 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선거운동 자격) ① 선거운동의 자격은 선본의 구성원으로 한다.

- ②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 실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기간에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는 제19조 제5항에 따른 선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선본 구성원명단 제출) ① 각 후보는 선본 구성원의 성명·학부(과)·학년·연락처를 입 후보신청서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제출할 선본 구성원의 수는 최소 10인이어야 한다.
- ③ 선본의 구성원이 제출당시의 인원보다 증원하고자 할 경우 선관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현수막, 정책 자료집) ① 선거유세용 현수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선본 당 3개 이내(걸개그림 제외)의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
2. 현수막의 크기는 기본규격 가로 600 × 세로 90(cm)로 정하며 색의 제한은 없다.
- ② 선거유세용 정책 자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동 정책 자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보자간 협의를 통해 개별 정책 자료집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공동 정책 자료집의 경우는 발행비용의 일부를 선관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후보자간 일정액씩 부담한다.
 3. 총학생회 정책 자료집의 부수는 재학생수 이내로 하며, 형식은 제한이 없으며 페이지는 후보당 10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개인 홍보물) ① 현수막과 정책 자료집을 제외한 개인 홍보물은 총 8종 이내(비 배포용 6종, 배포용 3종)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류를 제한한다.

1. 비 배포용 개인 홍보 포스터는 다음 각 목으로 한다.
 - 가. 후보자 포스터는 2절 이내로 하며 색도 제한 없이 인쇄할 수 있고, 매수는 20매 이내이다. 수작업 포스터 제작도 가능하며, 역시 2절 이내에서 색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
 - 나. 포스터는 선관위의 포스터 부착 지정 장소인 선관위 선거 공고 옆에 공정하게 1장씩 부착 가능하다.
 - 다. 포스터 부착 장소 및 시기는 rule meeting시 공고하며, 각 선본은 이를 합의하여야 한다.
2. 비 배포용 개인 홍보물 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 가. 비 배포용 개인 홍보물은 제한이 없다.
 - 나. 피켓은 크기 제한이 없다.
 - 다. 단체복은 1종으로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대중적 판매는 할 수 없다.

- 라. 선본 구성원임을 표시 할 수 있는 명찰을 착용할 수 있으며, 대중적 판매는 할 수 없다.
3. 배포용 개인 홍보물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 가. 배포용 홍보물은 유인물과 리플렛, 팜플렛 3종으로 한다.
- 나. 유인물의 크기는 A4크기 이내로 하고 색도는 단색이어야 하며 매수는 1종당 재학생 수 이내로 한다. 단, 배포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 다. 리플렛은 A4크기이내에서 1종당 재학생수 이내로 한다.
- 라. 팜플렛은 A4크기이내, 10면 이내에서 1종당 재학생수 이내로 한다.
- 마. 배포용 홍보물은 부착할 수 없다.

제24조(홍보물의 부착 및 배포) ① 후보자의 모든 홍보물(현수막, 정책 자료집, 비 배포용 홍보물, 배포용 홍보물)은 선관위의 사전허가 이후에 배포 및 부착(착용)하여야 하며, 타 후보에 대한 비방 혹은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 게재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 및 부착(착용)을 금지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의 모든 홍보물을 사전 심의하여야 하며, 선관위 도장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은 선관위의 도장이 날인된 것만 부착 가능하다.
2. 정책 자료집과 배포용 개인 홍보물(유인물 및 리플렛, 팜플렛)의 경우 심의 후 도장 날인 없이 배포가 가능하다.
3. 비 배포용 개인 홍보물 중 단체복과 액세서리를 제외한 모든 홍보물은 선관위의 도장이 날인된 것만 부착 및 사용 가능하다. 단, 단체복과 액세서리도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부착 금지 사항

1. 모든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④ 실내(강의실, 매점, 식당 등)에서의 홍보물 배포는 후보자 동행 시에만 가능하다.

제25조(기타 선거운동) ① 통신매체(전화기, 컴퓨터, 우편, SNS 등), 대중매체는 선관위와 후보자들의 rule meeting에 따라 선관위의 통제하에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다.

1.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매체와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
2. 게시할 선거홍보물은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관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홍보물은 제27조 규정에 의한다.

② 웅지세무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횟수, 내용 등)은 rule meeting시에 정한다.

③ 각 선본은 홈페이지 운영을 할 수 있다. 정책과 공약, 후보자 약력, 구성원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전·홍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rule meeting시에 정한다.

④ 악기(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악기 일체) 사용에 대해서는 rule meeting에서 정한다. 단, 악기 사용 시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설문지를 통한 선거운동

1. 설문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피설문자 무기명으로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결과를 무기명으로 배포용 홍보물을 통해 발표할 수 있다. 단, 설문지를 배포할 수는 없으며 후보자(혹은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와 유권자 간 직접 만남을 통해 설문해야 한다.
2. 설문의 내용은 선거운동본부의 정책 내용에 대한 설문으로만 그 내용을 제한한다.
3. 설문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해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결과 발표 시 배포용 개인 홍보물 중 유인물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제26조(선거 유세) ① 합동 유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동 유세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시한다.
 2. 합동 유세의 일시와 순서, 구체적인 내용은 rule meeting에서 정한다.
- ② 강의실 유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의실 유세는 수업시간은 금하며,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교수님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20분 이내로 한다.
 2. 강의실 유세 시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협조문을 발부할 수 있다.
 3. 강의실 유세 시 4인 이내 동행이 가능하며, 소개자는 예외로 한다. 유세 시 필요하다면 차트나 OHP, 빔 프로젝터(Power Point)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후보자 동행 없이 선본 구성원만으로 강의실 유세를 할 수 없다.
- ③ 생활관 유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관 내에서의 유세는 선관위와 후보자들의 rule meeting에 따라 선관위의 통제하에 방송 등으로 할 수 있다.
 2. 생활관 유세 시 거주자들의 학업과 생활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④ 정책 간담회(토론회)의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내용은 rule meeting에서 정한다.
- ⑤ 교정 유세
1.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교정 곳곳에서 개인 유세와 집단 유세(선전, 구호, 피켓팅, 노래, 춤 등)를 할 수 있다.
 2. 앰프나 확성기 사용은 금하며, 카세트(울동과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을 트는 용도로 제한)는 rule meeting시 각 선본의 논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3. 시간과 장소의 조절은 각 선본의 논의에 따른다.
- ⑥ 선거유세 시 각 후보는 선관위 대동 하에 선거유세를 한다.

제27조(부정선거운동행위 및 징계) ①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시행 과정 중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혹은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 게재 및 유포, 선거법의 위반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을 징계를 통해 시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운동행위로 간주하며, 선관위의 심사결정에 따라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금전 살포나 뇌물수수를 하는 행위

2. 후보 비방 행위
 3. 홍보물 통제를 위반하는 행위
 4. 투표 당일 투표 호객행위
 5.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선전시설물을 방해하는 행위
 7. 투표권 및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8.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 게재 및 유포행위
 9. 사전 선거운동
 10. 선거인 명부 소거 및 대리 투표행위
 11. 선관위 활동과 통제를 방해하는 행위
 12. 지정하는 곳 이외에 SNS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3.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운동으로 판정된 행위
- ② 선관위는 선관위 의결권에 근거하여 위반사항 종류, 횟수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징계한다.
1. 1차 경고(비공개 경고) : 회의 소집 후 본인 및 선본(임원)에게 비공개 경고조치 경고내용은 각 후보들에게 개별 통보함.
 2. 2차 경고(공개 경고) : 선관위 명의의 공개 징계문 작성 및 공고, 해당 선본의 공개 사과문 작성 및 공고(단, 경고문과 사과문의 부착장소는 rule meeting에서 정한다.)
 3. 3차 경고(후보등록 취소) : 선관위 과반수 인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한다.
 4. 징계순서는 위와 같은 순서를 따르며, 단, 선관위 심의와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강화 내지 완화 할 수 있다.
- ③ 징계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관위는 위원장의 결정 혹은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각 후보자 혹은 각 선본(임원)을 소집해야 한다. 다만, 소집 불응 시 불이익은 해당 후보 측이 지게 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 ④ 선관위의 징계사안에 대해 각 후보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징계결정 후 3시간 이내에 시정하여야 한다.
- ⑤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3시간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일사안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8조(투표일 후보 및 선본의 활동)** ① 투표일의 후보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으로만 한다. 그 구체적 활동 및 권유 내용은 선관위에서 지정한 것으로만 한다.
- ② 투표일의 후보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정 후보자는 정 후보자와, 부 후보자는 부 후보자와 동행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선관위 1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 ③ 단, 투표일에 후보자가 투표소를 참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후보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rule meeting에서 정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교문, 강의동 앞, 본관 앞, 생활관 앞에서 구호, 노래,

울동, 피켓팅만 할 수 있다.

제29조(Rule Meeting) ① 선거시행세칙에 제시되지 않은 선거운동 및 선거시행에 대해서는 Rule meeting에서 정한다.

② Rule meeting은 선관위 위원장과 선관위 재직인원의 과반수 참석, 각 후보자와 각 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의 경우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Rule meeting은 후보 등록마감 즉시 선관위에서 진행한다.

④ Rule meeting에서 각 후보자간에 합의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각 후보자들이 열람한 후 서명을 통해 사실 확인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에 명시된 합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선관위 징계조치의 근거가 된다.

⑥ Rule Meeting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공동 정책 자료집의 형식 및 원고제출일정
2. 현수막부착장소
3. 포스터부착장소 및 시기
4. 대학홈페이지 게시판에 의한 선거운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횟수, 내용 등)
5. 악기 및 카세트(울동과 춤을 추기위한 음악을 트는 용도로 제한)사용에 관한 내용
6. 합동선거유세의 일시와 순서, 구체적인 내용
7. 경고문과 사과문 부착장소
8. 투표일 후보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9. 투표소의 참관인 통보
10. 기타 세부적인 사항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30조(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 및 투표 시간은 선관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마감 시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인 선거인은 선관위원의 사실 확인 후 투표할 수 있다.

③ 투표를 개시할 때와 마감할 때는 선관위원의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각 후보 참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투표소 및 전자투표) ① 투표소는 선관위가 정하고,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공지한다.

1. 기표소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설치한다.
2. 투표함은 선관위원의 앞에 설치한다.

② 선관위는 온라인(모바일 등)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권자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기타 전자투표 실시예 필요한 사항

③ 투표 시 보통/비밀/직접/평등의 선거 원칙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최소한으로 하며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16.>

제3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제작하며, 선관위의 날인을 통해 확인한다.

② 투표용지 안의 내용은 후보자 이름과 번호, 기호로 제한한다.

제33조(투표용지 교부) ① 선관위원은 투표용지의 교부 전에 투표용지에 날인된 선관위 도장과 기재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② 위의 1항에 의거하여 투표용지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관위원은 각 후보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선관위 위원장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③ 투표용지의 교부와 함께 선관위원은 선거인명부의 '명부 대장란'에 해당 선거권자의 날인, 무인 또는 사인을 받아야 하며, 선관위원은 '투표용지 배부란'에 날인, 무인 또는 사인을 해야 한다.

④ 선관위원과 각 후보 참관인은 신분을 확인하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권자의 확인) ① 선거권자는 선관위원과 참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증, 기타 선거가능 증명서(사진부착 증명서에 한함) 제시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거권자는 재학증명서를 발부받아 선관위원과 참관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선관위원과 참관인은 미등재 선거권자임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의 하단에 성명, 학번을 기재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이를 훼손할 경우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해 투표용지 훼손이 발생할 경우, 선관위원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관위원과 참관인의 합의하에 훼손된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보관한 후 재교부할 수 있다.

④ 동일 기표소에 2인 이상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36조(후보자의 투표참관) ① 입후보자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는 개인적으로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기타 어떠한 행위로도 투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7조(투표함 봉인) ① 선관위원은 투표 종료시간에 지체 없이 투표소 출입문을 닫고,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정해진 봉인용지로 봉인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 봉인 용지는 선관위에서 제작하여 선관위의 날인이 있는 규격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여기에 선관위원과 각 후보 참관인의 날인, 무인 또는 사인을 찍어야 한다.

③ 잔여 투표용지와 기타 기표용구는 별도로 수거하여 지정된 봉인 용지로 봉인하고, 선관위원과 각 후보 참관인의 날인, 무인 또는 사인을 찍어야 한다.

④ 투표함의 표면에는 남은 투표용지 수와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를 비교하여 기재하고, 투표소명을 기재한다.

제38조(투표록 작성) ① 선관위원 투표록에 투표율을 작성하여 각 후보 참관인과 함께 날인, 무인 또는 사인한다.

② 해당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용지 일련번호의 시작번호와 끝 번호, 잔여 투표용지의 시작번호와 끝 번호를 작성한다.

③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를 대조하여 오차를 확인해야 한다.

제39조(투표함의 송부) 선관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각 후보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 기표용구,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록을 각각 봉인하여 선관위로 송부 및 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참관인) ① 각 후보자는 투표소 당 1인 이상의 참관인을 정하여 rule meeting시 선관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에 통보되지 않은 참관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각 후보자가 참관인을 정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각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의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징계의 근거가 된다.

⑤ 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 투표 및 개표상황, 투표함 개함 및 봉인에서 운반과정 까지를 참관하여야 한다.

⑥ 참관인은 투표시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 단, 선관위원의 허가를 얻어 약 10분간 떠날 수 있다.

⑦ 참관인임을 표시하는 명찰이나 신분증을 소지,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개표 사무) ① 개표 사무는 선관위에서 행한다.

② 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5명 이내의 개표사무 종사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개표 장소) 개표 장소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개표소의 참여와 질서유지) ①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경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44조(개표 시작) ① 개표 장소에 투표함이 모두 도착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로 산출한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었을 때 각 후보자와의 합의 후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② 개표할 때는 선관위원이 과반수 출석하고 각 후보 참관인이 함께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시한다.

③ 선관위는 각 후보자 또는 각 후보 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45조(개표 방법) ① 선관위는 투표인 수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한 후 참관인의 확인 하에 현황판에 기재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하여 선관위원이 투표용지를 분류하여 50매씩 묶어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기재한다.

③ 투표함의 개수가 여러 개 일 경우 개함 순서는 우선 도착투표함을 우선으로 한다.

제46조(유효 투표) ① 한 기표란에 단일 혹은 중첩된 ○표를 한 것을 유효로 한다.

② 1항에 근거하고, 둥근 곡선의 형태가 1/2이상인 때에는 유효로 한다.

③ 각 후보 기표란을 1/3이상 벗어나지 않은 것을 유효로 한다.

④ 기타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참관인의 확인 하에 유효로 한다.

⑤ 각 후보 참관인은 유효 투표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즉시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하며, 선관위 위원장은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무효 투표) ① 선관위의 날인과 투표용지 일련번호 및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투표용지의 어느 난에도 기표되지 않은 것은 무효로 한다.

③ 두 곳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각 후보 기표란 구분 중앙선에 기표한 것은 무효로 한다. 단, 각 후보자의 확인 하에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유효로 한다.

④ 어느 난에 기표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⑤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이름을 기입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기타 육안으로 확인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참관인의 확인 하에 무효로 한다.

⑧ 각 후보 참관인은 무효투표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즉시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하며, 선관위 위원장은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개표시의 이의제기) 개표 시에 각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된 투표용지는 같은 합의 모든 투표용지의 개표가 끝난 후

선관위 위원 3분의 2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49조(투표용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용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하고, 각각 지정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1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오차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오차율은 전체투표수의 1.5%로 한다.

② 비 당선인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로부터 선거결과가 무효로 결정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혹은 피선거권이 상실될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총학생회칙 제17조 제5항의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51조(선거 연기 및 투표 연장) 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을 때,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할 때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투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본 투표 기간보다 길게 정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20.12.16.>

제7장 당선

제52조(당선확정 및 임기) ① 경선일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하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단선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하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1. 찬성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임기는 총학생회칙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제53조(당선 선언 및 공고) 당선인이 결정된 후 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와 홈페이지에 당선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54조(당선의 이의제기) ① 각 후보자는 당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가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8장 기타

제55조(선거일정) 선거일정은 당선 공고일까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일정 및 사무가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일정예정	선 거 사 무	주 체	비 고
D-14 ~ D-9	·선관위의 구성	대의원회	
~ D-7	·선거일정 공고(선거벽보 제출수량 포함) ·선관위 명단 공고 ·위원장 직인인수인계 ·투·개표소 설치 결정, 공고	중앙선관위	
~ D-6	·선거운동본부 명부 교부 및 검인 ·후보등록서류 교부 및 마감 ·Rule Meeting시 협의사항사전준비	중앙선관위	
~ D-5	·후보자 등록신청접수, 수리, 공고	중앙선관위	
	·선거운동본부 설치신고	후보자	
D-4 ~ D-1	·선거운동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합동토론회 개최일정, 장소결정	후보자 중앙선관위	
	·합동토론회개최 고지 벽보 첩부		
~ D-3	·합동토론회 및 유세	중앙선관위	
	·선거벽보제출 및 첩부	후보자 중앙선관위	
~ D-2	·선거인명부작성제출	중앙선관위	
	·공동정책 자료집 인쇄, 배부(생략가능)	중앙선관위	
~ D-1	·투표용지 인쇄, 납품, 검수	중앙선관위	
	·투·개표 사무원 위촉, 교육	중앙선관위	
	·투·개표 참관인 신고	후보자	
	·투·개표소 설비, 선거인명부열람	중앙선관위	
D-DAY	·투표일	중앙선관위	
투표일이후일정	·당선인 결정·공고	중앙선관위	
	·선거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후보자	
	·선거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중앙선관위	

제56조(기타 사항)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전례 및 대한민국 선거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참고하여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20.12.16.>

제57조(적용 범위) ① 이 시행세칙은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② 과대표 선거 등 모든 학생 관련 선거 및 투표는 이 시행세칙을 모범으로 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0.12.16.>

제58조(시행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총학생회칙 제55조 내지 제58조를 준용하여 개정한다.

부 칙 <1판-제정/시행/공포 2020.11.1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공포 2020.12.1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총학생회장/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학 부(과)		학 번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학생회비 납부여부		하단에 체크	
연 락 처		자기학습 참여여부		회장	부회장
출 신 고 교		현재학년		기	
지 도 교 수		성 적 (직전학기)	/ 4.5	호	
위와 같이 웅지세무대학교 제 대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입후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 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첨 : 성적증명서 1부.

[서식 제3호]

서 약 서

본인은 웅지세무대학 제 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본교의 학풍을 준수하고 학칙과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등록된 서류에 대하여 부정이나 오류가 있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것은 물론 지정장소에 의한 선거홍보게시로 선거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총학생 회장 후보 : (서명)
부회장 후보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입후보 공약서

1. 학 부(과) :
2. 성 명 :
3. 학 번 :

위의 본인은 웅지세무대학 제 대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공약한다.

- 공 약 사 항 -

- 1.
- 2.
- 3.
- 4.
- 5.
- 6.

년 월 일

총학생 회장 후보 : (서명)
부회장 후보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제 대 총학생회장 · 부회장 선거

기호	1
후보	• 정회장후보 : • 부회장후보 :
기표란	

기호	2
후보	• 정회장후보 : • 부회장후보 :
기표란	

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대 총학생회장 · 부회장 선거

기호	1
후보	• 정회장후보 : • 부회장후보 :
기표란	

기호	2
후보	• 정회장후보 : • 부회장후보 :
기표란	

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7호]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명부

번호	성명	학부(과)	학년	연락처	재학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